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태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04
----------	-------

제출년월일 : 2019. 8.
제 출 자 : 박태순 의원 외 4명

1. 개정이유

-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6.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붙임 4(집행부검토의견서)

[붙임 1]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의회사무국
입안자	시의원
	박태순의원 대표발의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204호
----------	---------

제안년월일 : 2019. 9. 2.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자구를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구를 조문에 맞게 정비 함. (안 제3조)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u>안산시장(이하 “시장”</u> <u>이라 한다)</u> 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 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u>안산시장(이하 “시장”</u> <u>이라 한다)</u> 은 ----- ----- ----- ----- ----- -----